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44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민형배·윤준병·이재관

김태년 • 박홍근 • 김원이

이수진 • 황정아 • 이기헌

이성윤 · 소병훈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자 합니다.

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. 공동 주택,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, 이중주차,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,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 건에서 2020년 24,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.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·살인으로 이어집니다.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,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.

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,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 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 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하려 합니다.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9조의3). 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"를 "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2제2항에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중 "제3항에"를 "제4항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1.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

- 2.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
- 3.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 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 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 법 등) ① (생 략) 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②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용한다.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 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 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. 1.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.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 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 해하는 경우 3.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<신 설>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 <u>항에</u>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 다.

1.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 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
2.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
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
3.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
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
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
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

4.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 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
•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부
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
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
차를 방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
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
때에는 제8조의2제2항에-----

-----.

<삭 제>

<u><</u>삭 제>

<u><</u>삭 제>

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 하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
 <신 설>

⑤ 제4항에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관
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
<u>용한다.</u>